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홍콩지점

2. 제재조치일 : 2026. 4.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장 상환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내규 보완

지점은 현재 본점에서 개설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하여만 상환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용장 거래상대방(개설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향후 타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한 상환업무를 취급 예정이므로 타 은행 개설 신용장 상환업무 취급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프로그램 리뷰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점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사 강화

지점은 내규 「국외지점·국외사무소 운영준칙」 등에 따라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관할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 과정에서 본부 A부서가 제공하는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기초로 본점과 지점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은 현지 경제전망,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규제 등과 관련한 지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합의체의 충분한 심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한 리스크 영향분석도 부재함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지점 사업계획 방향성 제시, 수립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리스크 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경영계획 수립과정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국외점포 리스크관리, 수익관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지점은 내규「국외지점·국외사무소 운영준칙」등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 등을 타 국외점포와 마찬가지로 GBS(Global Banking System)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홍콩 금융당국 관리대상 지표[유동성유지비율(Liquidity Maintenance Ratio) 등]는 물론, 지점의 신용리스크 한도, 평가손익, 포지션 등 주요 리스크모니터링 지표와 수익관리 부문 등이 모두 수기 관리되고 있어 오류발생 위험이 크고 개별 지점 및 본점 차원의 통합관리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점은 본점 B부서와 협의하여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규제대상 지표, 경영실태 평가항목, 은행 차원의 리스크모니터링 및 수익성 관리 지표 등에 대한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고, 개별 국외점포는 물론 본점에서 전체 국외점포에 대한 수익성 지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현지 감독기관 보고사항에 대한 본점 보고체계 강화

은행 내규「국외지점·국외사무소 운영준칙」은 지점의 활동 및 현지 동향, 감독기관의 인가·승인 관련 사항, 사고 발생 및 처리전말 등 지점에서 본점 관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 감독기관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보고할 경우에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는 한편, 그 사본은 관할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은 검사대상기간 중 현지 감독기관에 제출한 보고문서의 일부는 전자문서 시행을 통해 본점 관할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외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제출방식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본점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한 감독기관 보고문서는 관할부서장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보고문서 관리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본점 보고 방식을 표준화하여 현지 감독기관 보고내역이 누락 없이 본점 관할부서에 적시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글로벌 여신 심사기능 강화

내규「국외지점·국외사무소 운영준칙」제31조 등에 따르면 국외지점·국외사무소의 여신 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하여는 본점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은행 국외점포가 취급하는 여신은 대부분 본점 여신협의체 전결대상으로 C부서 내 D반(□명)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조달여건을 감안한 마진율이 아닌 국내 외화대출의 내부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등 국가별, 통화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미흡하고, 국가별 규제 및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간·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 일부 시중은행은 해외 권역별 심사센터 설치하여 글로벌 여신에 대한 심사품질 제고에 노력

<조치할 사항>

따라서 본점 심사반의 해외여신 유경험자 비중 확대, 거래 개시단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외점포별 통화 및 조달여건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여신 심사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